

2016년도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 대한민국 실시 모집요강

* 대한민국 응시대상자는 반드시 본 모집요강을 참조하여 신청 할 것.(금년도에 시험을 실시하여 2016년도부터 장학금 지급)

* 일본 문부과학성의 모집요강을 기본으로 대한민국 내 실시 요강을 작성함에 있어 추가된 내용은 밑줄로 표시하였음.

연구유학생

일본에서, 연구유학생으로서 연구를 실시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아래

1. 모집분야

대학원에서 연구 가능한 분야로 한다.

단, 각 일본대사관 및 영사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이 해당국가 별로 특정모집분야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의학, 치학 및 복지학 등을 전공하는 자는, 일본 법률에 근거,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얻을 때까지는, 진료, 수술 등 임상 연수에 종사할 수 없다. 또한, 가부끼나 일본무용 등의 전통 예능, 공장 등에서의 특정 기술, 기능 등의 실무 연수를 목적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덧붙여, 복수 또는 부전공 등의 분야로 응시할 경우 그와 관련된 이수과목 등을 성적증명서에 형광색 등으로 체크할 것.

2. 응모자의 자격 및 조건

일본정부 문부과학성은 일본에서 연구를 하는 것을 통해 일본과 자국간의 교류가 되고, 양국 나아가 세계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다.

- (1) 국적 : 일본정부와 국교관계가 있는 나라의 국적 소지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 덧붙여 무국적자는 대상이 된다. 신청 시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모집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신청시에 일본 이외에서 생활 근거지를 둔 일본국적을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는 일본 입국 시까지 외국의 국적을 선택하고 일본국적을 포기할 예정자는 대상으로 한다. 선발은 응모자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재외공관에서 실시한다.

(2) 연령 : 원칙적으로 1981년 4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

(3) 학력 : 일본 입국시까지 일본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덧붙여 일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해당자로 한다.

 - ① 외국에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16년(의학, 치학, 수의학 및 6년제 학부·학과에 기초를 두는 약학을 이수하는 박사 과정 입학에 대해서는 18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예정자를 포함한다.)
 - ② 일본의 대학원에서 개별 입학자격심사에 의해,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22 세(의학, 치학, 수의학 및 6년제 학부·학과에 기초를 두는 약학을 이수하는 박사 과정 입학에 대해서는 24세)에 이른 자. (예정자를 포함한다.)

상기 이외의 자격에 의해 일본의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지는 자. (예정자를 포함한다.)
또한, 박사 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응모가 불가하다.

(주1) 학부와 대학원 각각의 성적이 70%이상일 것(신청마감일 시점).

(주2) 국외교육기관 졸업자 등은 5.전형 및 결과 통지와 같이 개별접수가 가능하다.

(주3) 학부 졸업예정자 등은 소속 대학관계자의 추천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4) 일본어 등 : 적극적으로 일본어를 학습하려는 의욕이 있는 자. 일본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일본 입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이해하려는 의욕이 있을 것. 또한, 일본에서 연구에 종사하고, 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질 것.

(5) 건강 : 심신 모두 일본의 대학원에서의 학업에 장애가 없을 것.

(6) 출발 시기 : 원칙적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사이에 일본 입국이 가능한 자. 또는 채용대학이 정하는 같은 해, 각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원칙적으로 9월 혹은 10월)로부터 시작하여 전후 2주 중, 채용대학이 지정하는 기일. 「일본입국시기」는 신청자에 기재된 입국시기로 한다. 신청 후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7) 사증 취득 : 원칙적으로 일본 입국 전에 「유학」비자를 반드시 취득하고, 「유학」이라는 재류자격으로 입국해야 한다. 국적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에서 현지발급 하는 것으로 한다. 일본에 입국 후 재류 자격을 「유학」이외로 변경한 자는 재류자격 변경시점에서 일본정부장학금 유학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할 것.

(8) 졸업 후 : 졸업 후에도 유학한 대학과 긴밀한 연대를 유지, 졸업 후 양케이트 조사 등에도 협력함과 함께, 귀국 후에는 재외공관이 실시하는 각 사업에 협력하고, 자국과 일본과의 관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9)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외로 한다. 채용 이후 판명이 날 경우에는 사퇴할 것.

 - ① 제1차합격자 발표일(8월 첫째주)이전까지 현역 군인 또는 군속 자격인 자.
 - ② 일본 문부과학성 또는 채용 대학이 지정하는 기일에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자.
 - ③ 과거 일본정부(문부과학성)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이 종료된 다음부터 장학금지급 개시까지 3년 이상의 교육연구 경력이 없는 자. 다만, 귀국 후, 재적 대학을 졸업한(예정자를 포함) 일본어일본문화연수유학생 그리고 제1차합격자 발표일 이전까지 귀국 및 장학금지급 종료가 확실시 되는 일한공동이공계 학부유학생 및 영리더프로그램 유학생이 연구 유학생으로서 응모하는 경우는 그렇지만은 않다.
 - ④ 이미 재류 자격 「유학」으로 일본 대학 등에 재적하고 있는 자 및 자국에 있어서의 신청 시부터 장학금 지급 기간 개시까지 사비 외국인유학생으로서 일본 대학에 재적, 또는 재적 예정인 자.
 - ⑤ 본 제도에 의한 장학금과 중복하여 일본정부(문부과학성) 이외의 기관(자국 정부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장학금 등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로부터 하여 장학금 등을 받을 예정인 자를 포함.)
 - ⑥ 「졸업예정자」가 학부과정 재학자로 10월 말까지 졸업예정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자이거나 해당 자격 및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 또한, 응모 마감 시점에서 대학의 학부과정을 「유학중인」자.
 - ⑦ 신청 시 이중 국적자로 일본 입국 시까지 일본 국적을 포기한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자.
 - ⑧ 본 제도는 일본의 대학에 재적하며 일본에서 연구할 유학생을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시부터 일본

이외에서의 필드 워크, 인턴십 등을 희망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⑨ 신청자가 공무원 교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할 경우에는 유학이 가능하다는 소속 기관의 사실증명서류를 면접서류 마감이전까지 제출해야 함.

⑩ 응모시점에서 짧기만 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자.(2016년 3월까지 과거 5년간 합산하여 3년이상 일본의 교육기관 등에서 재류한 자, 또는 재류중인 자.)

3. 장학금 지급 기간

(1) 일본 입국 후, 연구생, 과목 등 이수생, 청강생 등(이하 「연구생 등(비정규생)」이라고 한다.)으로서 재적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다.

① 2016년 4월에 입국할 경우 : 2016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최장 2년간

② 2016년 10월에 입국할 경우 : 2016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최장 1년 6개월간

어느 경우에도, 일본어 등 예비교육(이하 「예비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는 6개월간의 예비교육 기간을 포함한다. 상기 이외 입국의 경우, 별도 문부과학성에서 결정한다.

(2) 일본입국 후,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 과정 및 전문직 학위 과정에 재적할 경우는, 입국 시기에 관계없이, 각각의 정규과정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기간(표준 수업 연한)으로 한다. (예비교육이 필요한 자는 6개월간의 예비교육 기간을 가산한다.)

(3) 장학금 지급을 연장하는 경우

연구생 등(비정규생)으로부터 대학원 정규과정, 혹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전문직 학위과정으로부터 박사과정에 진학을 희망하는 자로,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히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 연장심사를 받아 장학금 지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다. 자동적으로 전원이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단, 아래 사항에 유의할 것.

① 연구생 등(비정규생)으로서 장학금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 기간 연장신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상위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단, 사비 유학생으로서 진학 또는 재학하는 것은 가능.)

③ 연구생 등(비정규생)으로 재적하는 기간 내에 정규 과정에 진학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단, 2018년 4월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는 귀국여비 지급신청을 사퇴한다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4. 장학금 등

(1) 장학금 : 월액 143,000엔(연구생 등(비정규생)), 144,000엔(석사과정 및 전문직 학위과정), 145,000엔(박사과정), (특정 지역에 있어서 수학 연구하는 자에 대해서는 월 2,000엔 또는 3,000엔을 월액단위로 가산. 또한, 예산 상황에 따라 해마다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을 지급한다. 다만, 대학을 휴학 또는 장기간 결석했을 경우,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다음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기간에 관한 장학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① 신청서류에 허위 기재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

② 문부과학대신에 대한 서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③ 일본의 법령 등을 위반했을 때.

④ 대학 또는 예비교육기관에 있어 퇴학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혹은 제적되었을 때.(또한, 대학 등에 있어 처분을 결정할 때까지의 사이,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때도 있다.)

⑤ 학업성적불량이거나 정학 등에 의해 표준 수업 연한 내에 수료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⑥ 출입국관리법 별표 제1의 4에서 정하는 「유학」 재류자격이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 되었을 때.

⑦ 다른 장학금(용도가 연구비로서 특정된 것을 제외한다.) 지급을 받았을 때.

⑧ 채용 후, 진학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간 연장 승인을 받지 않고 상위과정에 진학할 때.

(2) 여비 :

① 입국 여비 : 문부과학성은, 원칙적으로 여행일정 및 경로를 지정하여,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 근처의 국제공항(원칙적으로 국적국가)으로부터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받아들이는 대학이 통상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또한 일본으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거주지에서 근처 국제공항까지의 여비, 공항세, 공항사용료, 도항에 필요한 특별세, 일본내의 여비 등은 유학생의 자기 부담으로 한다. 「유학생의 거주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기재된 현주소로 한다.

② 귀국 여비 : 장학금 지급기간 종료 월내에 귀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만, 본인의 신청에 근거, 원칙적으로 나리타 국제공항 또는 받아들이는 대학이 통상 경로로 사용하는 국제공항으로부터 해당 유학생이 도착하는 장소 부근의 국제공항까지의 하급 항공권을 교부한다.

(주 1) 「3. 장학금지급기간 (3) ③」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2018년 4월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기간의 연장 신청을 행하였으나, 연장을 하지 않고 귀국하는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귀국 여비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연장 신청을 할 때에 충분히 유의할 것.

(주 2) 입국 및 귀국 여행시의 보험금은 유학생의 자기부담으로 한다.

(주 3) 장학금 지급 기간 종료 후, 계속해서 일본에 체재하며 일시 귀국하는 경우의 귀국 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3) 수업료 등 : 대학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 검정료는 일본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정규생으로 진학하지 않는 경우의 입학 검정료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5. 전형 및 결과 통지

(1) 재외 공관은 해당정부의 협력을 얻어, 신청서류, 어학필기시험 및 면접에 근거해, 제 1 차 전형을 실시한다.

(2) 어학필기시험은, 일본어와 영어로 한다. 반드시 전원이 수험에 응할 것. 일본어 시험은 대학 배치나 일본 입국 후의 일본어

교육 시 참고 자료로서 활용한다. 특히,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역사, 일본법제 등, 충분한 일본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일본어 능력이 불충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하지 않는다.

(3) 각 전형에 해당하는 심사 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청 서류 및 서류 심사 : 학부를 포함한 최종 출신대학에서 전체 평균성적이 70% 이상의 성적일 것,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을 것, 구비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을 것 등.

- 제출 마감: **2015년 5월 26일(화) 14:00:00** 전까지(우편의 경우 5월 22일(금) 소인까지만 유효)

- 제출 방법: 각 대학(학부과정)이 총장(학장)명의 공문서와 함께 응시자 서류를 수합하여 제출(각 응시자는 졸업 또는 졸업 예정 대학 학부 담당부서에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원칙적으로 응시자 직접 접수는 불가)해야 함, 상세 내용은 아래 7. 응모절차 참조).

- 제출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담당

우편번호: 110-3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64(운니동 114-8)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담당자 앞
전자메일: kyuho.cho@so.mofa.go.jp

- 제출 서류: 7. 응모절차의 제출 서류 (1)필기시험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 서류 심사: 최종선발인원의 약 10배수 정도 예정.

- 심사 방법: 제출된 서류 중 각 응시자 학교 성적 및 연구계획 등을 심사하여 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예정(우선 순위는 학교성적, 연구계획, 서류 준비가 우수한 사람을 우선함).

- 접수 발표: **2015년 6월 5일(금) 이전까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필기시험 대상자 수험번호 발표 예정(덧붙여 접수번호와 수험번호는 각 대학 등 주관기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할 예정, 개별 접수자는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② 필기 시험 : 일본어 또는 영어 모두 일정 성적 이상일 것.

- 시험 일시: **2015년 6월 14일(일) 12:00~18:30** 예정(필기시험 대상자 발표시 시험 시간 등 상세 내용 안내).

- 시험 장소: 풍물여자고등학교(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출구 5분), 제주총영사관 예정.

- 대상 인원: 서류 접수자(단, 추후에라도 서류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격을 박탈함).

- 선고 내용: 문과계 분야는 일본어, 영어 필기시험, 이과계 분야는 일본어, 영어 수학 필기시험(단 수학시험은 자격시험으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부족시 수학과목 전체평균 이상자 중 일본어 영어 합산성적 상위자로 보충 예정)일 것), 각 관련 분야별로 일본어와 영어 각 과목별 100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합산성적 상위 자수으로 면접 대상자를 결정하며 각 과목별 성적 50점 미만자는 충전대상에서 제외, 단 동점자일 경우 일본어 영어 수학 성적 우수자 순(각 분야별 면접인원 부족시 총점 상위자로 보충 예정).

- 선고 방법: 응시자는 각 지원 분야(문과계, 이과계, 관련)를 선택해야 되며, 선택한 관련분야별 응시자 비율에 의해 면접대상 인원이 정해 진다. 또한 각 분야별로 나뉘어 면접을 실시하여 면접대상자 비율에 따라 최종 충전인원이 결정됨.

- 준비물: 신분증, 수험표, 필기도구(흑색 복펜) 등.

- 결과 발표: **2015년 7월 2일(목) 이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면접대상자의 수험번호를 발표 예정.

③ 면접 : 일본유학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일본대학에 대한 정보수집을 실시하고 있는 자일 것 등.

또한, 일본어 또는 영어의 회화 능력에 대하여, 일본의 지도교원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학 능력이 있을 것. 다만, 일본어 능력이 필요한 전공 분야를 희망하는 자에 있어서는, 상당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일 것.

- 시험 일시: 7월 14일(화)~24일(금) 예정(일정은 변경될 수도 있다. 면접대상자 발표시 확정일정 발표 예정).

- 시험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회의실 예정.

- 대상 인원: 약 70명 정도.

- 제출 마감: **2015년 7월 9일(목) 16:00시** 이전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필착.

- 제출 서류: 7. 응모절차의 제출 서류 (2)면접대상자 제출서류 참조.

- 선고 내용: 연구계획, 학교 성적, 충전서 등 제출서류, 유학의지, 인성, 장래성 등.

- 선고 방법: 각 응시분야별 면접일정을 정하여 실시하며, 면접 순번에 의해 1인당 약 10~15분 정도 실시.
* 최종 필기선고 30%, 서류심사 30%, 면접심사 40%를 합산하여 성적 상위자 결정.

- 충전 인원: 3~40명 정도 충전예정(과거 최종합격 실적, 2015년 41명, 2014년 41명).

(4) 제 1차 선고의 결과 통지: 면접 종료 후 약 2~3주 이내 1차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

(5) 이 제 1차 전형에 합격한 후보자는, 제 1차 전형 후 8월 31일(월)까지 희망하는 일본의 대학으로 직접 연락을 하여, 대학원생 또는 연구생 등(비정규생)으로서의 입학허가서, 혹은 연구생 등(비정규생)으로서의 수락내락서(이하, 「입학허가서 등」이라고 한다.)를 받도록 노력할 것. 또한, 입학허가서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각 대학 유학생 창구와 대학 연구자의 겸색 사이트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9월 1일(화) 이후에 일본 대학과 연락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6) 입학허가서 등을 얻기 위한 대학으로의 제출 자료로서는, 재외공관에 제출한 서류 일체(신청서, 출신 대학의 성적증명서,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 등에 재외공관의 확인인장이 된 것.) 및 재외공관이 발행하는 제 1차 전형 합격증명서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 대학으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7) 문부과학성은, 재외공관의 제 1차 전형의 결과에 근거, 제 2차 전형을 실시, 배치대학이 결정된 자를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채용한다.

따라서, 재외공관에 있어서의 제 1차 전형에 합격한 자가, 국비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채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배치희망대학신청서에 기재한 제1부터 제3지망 대학으로부터 입학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 채용되지 않는다.

6. 대학에의 배치 및 대학에 있어서의 연구 지도

(1) 대학배치는, 원칙적으로 제1차 전형 합격자가 대학원 정규생 또는 연구생 등(비정규생)으로서의 입학 허가서를 받은 대학이며, 배치희망대학신청서에 기재한 제1부터 제3희망 대학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에서 배치 협의를 행하여 승낙을 받는다면 해당 대학에 배치한다. (대학원 정규 과정에의 입학허가서를 얻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생 등(비정규생)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학원 정규과정에 배치한다.)

다만, 희망하는 대학이 공사립인 경우에는 수업료 등과 관련되는 예산의 형편 등, 배치희망대학신청서에 기재된 희망순위에 맞지 않을 경우가 있다. 덧붙여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2) 대학에 있어서의 강의·실험·실습 등의 연구 지도는,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실시된다.

(3) 일본어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배치대학으로부터 판단되었을 경우는, 최초 6개월간, 배치된 대학 또는 문부과학성이 지정하는 대학 등의 예비교육기관에 입학, 일본어교육을 받는다. 일본어교육을 수료한 자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배치 대학에 입학한다. 다만, 예비교육기관에 있어서의 성적 불량으로 인해 전문교육을 받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4. 장학금 등의 (1) 참조.)

(4) 학생이 자신의 연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일본어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배치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비 교육을 거치지 않고, 연구생 등(비정규생) 또는 대학원생으로서 대학에 직접 입학시키는 경우가 있다.

(5) 연구생 등(비정규생)으로부터 대학원의 정규 과정, 혹은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전문직 학위과정으로부터 박사과정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시험을 수험, 합격하면 진학할 수 있게 되지만, 진학 후도 국비외국인유학생으로서 장학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는, 별도, 심사를 거쳐, 장학금 지급기간의 연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3. 장학금 지급기간 의(2) 참조.)

덧붙여 연구생 등(비정규생)으로 재적한 채로 장학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6) 연구생 등(비정규생)으로부터 대학원 정규 과정에 전학하는 경우는, 연구생 등(비정규생)으로서 재적하고 있는 대학의 대학원에 전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학생의 전문분야·능력 등으로 판단하여, 해당 대학의 대학원으로의 전학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입학허가를 받는 것을 전제로, 다른 대학원에 전학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

(주1) 일본의 학교제도상, 석사과정은, 통상 대학졸업 후(학교교육에 있어서의 16년의 과정을 수료 후)의 2년 과정이며, 또, 박사과정은, 통상, 석사과정 수료 후의 3년 과정으로 되어 있어, 이 기간 동안 재학하여 소정의 단위를 취득해 연구논문을 제출 후,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각각 학위가 주어진다.

(주2) 의학, 치학, 수의학 및 6년제 학부 학과에 기초를 두는 약학에 대해서는, 통상, 4년의 박사과정뿐이다. 이 경우, 입학 자격은,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18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과정이 16년인 경우는, 과정 수료 후, 대학 여그스 틈에서 2년 이상의 여그력을 가지고 일본의 대학원이 전자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한다.

(주3) 전문직 학위과정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업을 담당하기 위한 깊은 학식 및 탁월한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3년도부터 새롭게 제도화된 전문직 대학원 과정이다. 표준 수업연한은 통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전공 분야에 따라 시사하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가 있다. 수료학위명은 석사(전문직) 학위로 수여된다.

또한, 전문직 학위 과정 안에는, 법조양성을 위한 법과대학원의 과정도 있어, 수업 연한은 3년, 수료하면 법무박사(전문직)의 학위가 수여된다.

(주4) 대학원의 입학 시험은,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어(통상 2개국어), 전공 과목, 논문 등이 부과된다.

7. 응모절차

을모자는, 아래 서류 일체를 재외 공관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한다.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1) 필기시험 응시자 제출 서류: 본 서류는 수험자가 서류를 준비하여 각 출신 학부의 대학에 제출하여 각 대학이 수합하여 본원으로 일괄 제출해야 함.

- 제출 마감: **2015년 5월 26일(화) 14:00:00**|전까지(우편의 경우 5월 22일(금) 소인까지만 유효).
 - 제출 방법: 각 주체기관은 응시자의 제출 서류를 수합하여 자격여부를 확인한 뒤, 주체자 리스트를 작성(영문 성명과 학점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 기관장 공문서와 함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 기일 안에 제출 할 것. 단, 일본교육기관 재직자 및 국외교육기관 학부 졸업자 등은 사전에 허가(주2)를 받아 개별접수를 하되, 반드시 졸업증명서 등을 해당국 국내대사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실확인증명서 또는 졸업장의 진위여부를 확인 받아 첨부(영문 또는 일본 번역공증서와 함께)해야 하며, 주체기관 서류일체(공문제외)를 본인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 (별첨 PS 참조- 2016 연구 응시자 제출서류 안내.pdf 파일을 참조할 것).
(가) **주체기관 제출서류:** 아래 서류 양식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A 기관장 공문서(약식·영어) 학교 공문서(약식·영어) 1매

- * 본 리스트는 5월 22일(금)까지 담당자 예약주소(전화번호)에 등록된 주소로
B. @1. 연구 추천자 리스트(소정파일양식) 1부.

아래는 시장가 제출서류(아래 ①은 시장가 제출서류를 참조).

- ① 응시자 제출서류: 아래 서류를 ①부터 ⑫까지 순서대로 한 세트로

(나) 흥신소·술집선유·안데·서류는 모두 너의 까신·문서대도·안·세드를 만들어 주진기원(주진대역·증)에 세우울 것.

- ① 연구 전경서[본문 1부] *사진 부록.
 - ② 배치희망대학신청서[원본 1부] *사진 부록.
 - ③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원본 1부].
 - ④ 출신대학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출신 학부(편입학 학교 포함), 대학원 모두) [원본 1부].
 - ⑤ 출신대학에서 발행한 졸업증명서(출신학부, 대학원 모두, 졸업 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원본 1부].
 - ⑥ 최종 출신 대학장 또는 담임 교원의 추천장 [원본 1부].
 - ⑦ 근무처 상사의 추천장(현재 재직자만) [원본 1부].
 - ⑧ 건강진단서(소정양식에 의한다.) – 면접 대상자만 제출.
 - ⑨ 학위논문 개요 등(논문이 있는 경우만) [원본 1부].
 - ⑩ 작품 사진 또는 연주 녹음 테이프(미술 음악 전공자) [원본 1점].

⑪ 연구 응시원서&수험표 양식(소정의 용제에 의한다, *사진 부착) [원본 1부](2매로)

⑫ 졸업예정자 주천확인서(해당자만) 1부. 본 서류는 대학 담당자가 각각 신청자를

제 2 장
국내외 주요 경쟁사 분석

*주1: 추천서의 경우 면접대상자 제출서류에 사본 3부가 필요하니 반드시 사본 3부를 사전에 받아

- (2) 면접 대상자 제출 서류: 본 서류는 면접 대상자가 직접 제출함.
- 제출 마감: **2015년 7월 9일(목) 16:00시 이전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제출.
 - 제출 서류: 아래 제출서류 A, B, C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서류양식:
 - D. @2. 연구 면접대상자 엑셀파일은 전자메일 **kyuho.cho@so.mofa.go.jp**로만 발송:
- A. 사진(여권용 사진, (3)복사본 신청서 3부에만 부착) 3장.
 - B. ⑧ 건강진단서(소정양식) [원본 1매], [복사 3매].
 - C. 이미 제출한 (나)을시자 제출서류(클립으로만 첨할 것) ①~⑫복사본 3부(단, 각 ①신청서 사본에 사진 부착하고, 신청서 마지막 페이지 서명란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 할 것).
 - D. @2. 연구 면접대상자 엑셀파일(소정양식, 이메일로만 송부).
- (주1) 위 필기 및 면접관련 서류는, 반드시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일본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할 것.
- (주2) 신청서 및 배지희망대학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진은,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크기는 4.5X3.5cm 상반신 · 정면 · 탈모할 것(여권사진 사용해도 무관). 또한, 뒷면에는 국적 및 성명을 기입할 것. 사진을 복사 또는 일반 프린트하여 부착하는 것은 불가.
- (주3)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은, 대학 배치시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자신의 전공분야 및 연구계획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할 것.
- (주4) 출신대학의 성적증명서는, 대학 학부, 대학원의 학년마다 취득한 전과목 성적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그 성적이 몇 단계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예를 들면, 학위취득증명서나 단지 몇 단위로 졸업 등의 졸업증명서는 대용 불가.). 또한, 증명서 원본은 해외유학 용도로 각 소속 기관이 직접 발행한 관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한다. 인터넷 발급 개별 프린트 또는 팩스 원본서류는 불가함. 반드시 해외 유학용으로 직인 또는 암인된 증명서류일 것.
- (주5) 출신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취득증명서는, 졸업증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으로도 대용가능. 다만, 이 경우는, 해당 출신대학의 책임자 또는 해당국 대사관(국외대학 출신의 경우)의 확인증명을 첨부할 것. 또한, 학부 졸업예정자로 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학부 재학증명서와 함께, 서류 ⑫ 졸업예정자 추천서류 양식을 추천기관 담당관으로부터 발부 받아 함께 제출할 것. 단, 대학원의 경우 재학증명서로 무관함.
- (주6) 학위 논문개요 등은, 졸업논문, 발표논문 등의 요약으로 무관하나, 학력 판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유의할 것.
- (주7). 제출서류는 각 서류별 맨 앞장 우측상단에 각 기호 ① ~ ⑫까지의 숫자를 적어서 제출할 것
- (주8)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할 경우 파일 제목을 추천기관명 또는 을시자 성명으로 바꾸어 송부할 것.
- (주9) 최근 5년간 2년이상 일본에 재류한 자 또는 재류중인 자는 출입국 기록 증명서를 면접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할 것.

*상기 파일 등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해당 국비유학 모집 안내 게시물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8. 주의사항

- (1) 일본에 입국에 앞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일본의 기후, 풍토, 습관, 일본과 대한민국과의 법제도의 차이, 대학의 상황 등에 대해, 미리 충분히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입국 직후 장학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므로, 생활 자금으로서 미화 2,000달러 정도 준비해 둘 것.
- (3) 숙소에 대하여
 - ① 대학의 유학생 숙소

유학생을 위한 전용숙소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자는 희망할 경우, 소정의 조건하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수에 제한이 있어, 화망자 전원이 입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② 민간의 숙소 등

상기의 숙소에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일반 학생기숙사나, 민간의 숙소에 입주하게 된다. 또한,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가족용의 숙소의 확보는 자극히 곤란한 상황에 있으므로, 유학생이 일본으로 입국 후, 숙소를 확보한 후, 배우자·가족 등을 불러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모집요강, 신청서류에 병기된 영문은 편의상 붙여 넣은 것이고, 영문에 의한 표현이 일본어 문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재된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문의할 것.
- (5) 이 모집요강에서 정해진 것 이외에 국비외국인 유학생 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일본정부가 별도 정한다.
- (6) 이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또는 기타 의문이 있으면,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조회하여, 그 지시에 따를 것.

주 1) 모집요강의 내용은 매년 일본정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람.

주 2) 본 내용을 추천기관 이외에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얻어 사용할 것(무단 사용을 금지한다.).

<참고>

-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
- 서류제출:

주소: 110-3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비유학담당 조규호 앞

전화: 02-765-3011, 팩스: 02-742-4629, 전자메일: **kyuho.cho@so.mofa.go.jp**